



상주시의회 공고 제2017 - 15호

「상주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상 주 시 의 회 의 장



「상주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참여자를 실명으로 등록관리하고 이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책참여자의 공지와 책임성을 높여 시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시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안 제3조)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안 제4조 및 제5조)
- 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안 제6조)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7조 및 제8조)
- 사업평가 등(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상주시의회의장 [참조 :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 상주시 중앙로 111, 상주시의회]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화 : 054-537-7841, FAX : 054-535-9854, 상주시의회 홈페이지 www.sangjucounci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상주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단체의 경우 단체명, 대표자)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의견 내용	비고